

울산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15505, 2021나15512(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7. 14.

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718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20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8. 28. 제49738호, 2014. 10. 15. 제58554호, 2014. 10. 15. 제58555호, 2014. 10. 15. 제585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2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3. 11. 접수 제13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13행(나. 판단)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공동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정한 사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피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조합의 구성원들은 동업재산의 관리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가 아닌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마쳐 놓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는 전제에서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원고가 단독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합유물의 보존행위를 합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며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민법 제706조 제3항은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합유물 보존행위의 취지 및 합유자의 이의권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명의신탁관계의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조합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행위는 조합재산의 관리방법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보존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합원의 1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단독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조합원 중 1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합원인 원고 및 피고의 합유로 이전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참조), 조합원인 원고 개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목, 판사 박주연, 판사 김용희

부 동 산 목 록

1. 경상북도 경주시		도로 99㎡
2. 경상북도 경주시		임야 415㎡
3. 경상북도 경주시		임야 3733㎡
4. 경상북도 경주시		임야 2636㎡
5. 경상북도 경주시		임야 3687㎡
6. 경상북도 경주시		임야 3693㎡
7. 경상북도 경주시		임야 470㎡
8. 경상북도 경주시		목장용지 341㎡
9. 경상북도 경주시		목장용지 3053㎡
10. 경상북도 경주시		목장용지 1355㎡
11. 경상북도 경주시		목장용지 1735㎡
12. 경상북도 경주시		목장용지 925㎡
13. 경상북도 경주시		목장용지 805㎡
14. 경상북도 경주시		임야 2177㎡
15. 경상북도 경주시		임야 689㎡
16. 경상북도 경주시		목장용지 158㎡
17. 경상북도 경주시		목장용지 50㎡
18. 경상북도 경주시		목장용지 2966㎡
19. 경상북도 경주시		목장용지 79㎡
20. 경상북도 경주시		목장용지 261㎡
21. 경상북도 경주시		313㎡

